



# 2018 ~ 2019년도 행정감사 사례집 - 분야별 -

2020. 1.



**한극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 행정지원과)

# CONTENTS

<b>I</b>	제1장 수업 · 시험관리 분야 .....	1
<b>II</b>	제2장 학생 · 학적관리 분야 .....	16
<b>III</b>	제3장 복무 · 서무관리 분야 .....	22
<b>IV</b>	제4장 보안관리 분야 .....	26
<b>V</b>	제5장 회계관리 분야 .....	31
<b>VI</b>	제6장 물품 · 도서 · 국유재산관리 분야 .....	41

# 제 1 장

수업 · 시험  
관리 분야

## 1. 실험실습재료 관리 부적정

《지적 1건》

실험실습담당자는 실험실습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실험실습 재료는 반드시 수불대장에 기재·정리하여야 하며, 기자재는 고장이나 조립, 사용방법 등의 미숙으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되어 있고, 기자재의 활용사항은 실습일지에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실험실습실 등 운영에 관한 규정

### < 사례 1 >

○○지역대학 수업조교 □□□ 등 3인은 2015. 2학기, 2017. 1학기부터 2018. 1학기까지 실험실습을 운영하면서 실습재료에 대한 수불을 대장에 기재·정리하지 않았고, 기자재 사용내역을 실습일지에 기록·유지도 하지 않았으며, 2015. 5월부터 2018. 7월 현재까지 학과에서 지급한 실습재료인 각종 실습약품 등에 대하여 해당학과에서 별도의 사후관리 안내가 없음에 따라 보관기간도 3년 이상 지난 확인 불가능한 시약 30종을 별도의 캐비닛 안에 시건장치 없이 개방된 상태로 방치 보관한 사실이 있음.

## 2. 출석수업시험 반 편성 소홀

《지적 1건》

출석수업 반편성 시 강의실 사정(수용인원)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교양과목 등 소수인원 반은 우선적으로 합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대학 연도별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은 사업별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되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고 있음

근 거 2015. 2학기 ~ 2018. 1학기 출석수업 운영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5. 2학기~2018. 1학기까지 출석수업 반편성을 하면서 강의실별 수용인원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분반하였고 강의실 수용인원과 평균 수강률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면 2015. 2학기부터 2018. 1학기까지 교양과목의 경우만 산정해 볼 때 약 290개의 강의반 수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강사료 등 총 153,236,000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효율적인 반편성으로 강의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3. 출석수업 수강신청자 소수인원 반 폐강기준 적용 부적정 **《지적 1건》**

출석수업 시 강사수급 및 장소변경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과목별 수강신청자가 7명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하고, 폐강대상 학생의 학업 대체방안으로 출석수업 대체시험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근 거 2019. 출석수업 운영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9학년도 1~2학기 출석수업 교과목인 □□□ 등 18과목에 대해 출석수업 수강 신청자가 7명 이하인 경우에도 소수인원 반을 폐강하지 않고 출석수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 4. 출석수업 원격영상강의 외부강사 운용 절차 부재 **《지적 1건》**

우리 대학 출석수업 강의는 각 지역대학 담당자들이 외부강사와 출석수업 강사 위촉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강의일정을 편성하며, 외부강사가 지역대학으로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 한 뒤 지역대학 담당자가 강사료 구분 지급을 위한 근거로 요청하여 받은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근 거 ※ 관련 지침 및 세부시행계획 부재

#### < 사례 1 >

원격 영상강의는 학과가 강의할 영상강의 일정을 지정하고 전 지역대학으로 영상을 원격 송출 하면서, 강사료 지급만을 특정 지역대학을 ‘주관’ 대학으로 지정하여 지급하게 할 뿐, 관련 지침 및 세부시행 계획의 부재로 강사 위촉 및 관리 주체가 정해 있지 않아, 원격 영상강의 전 강사와의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미교부, 성범죄 경력조회 미부제, 강사료 지급 시 증빙서류 미검증 등의 사실이 있음

## 5. 출석수업 시간강사 위촉 부적정

《지적 3건》

외부강사 위촉 시 전(前)년도 동일 학기 출석수업 강의평가 결과가 평균 하위 10% 미만인 자는 해당 지역, 해당 교과목에 위촉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위 10% 미만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3.8점 미만)에도 위촉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2015학년도~2018학년도 출석수업 운영계획 내 강사 위촉 배제 기준, 연도별 강의 평가 결과 알림 공문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전(前)학년도 동일 학기 출석수업 강의평가 결과 평균 하위 10%미만인 자 중 □□□등 10명을 2015. 2학기부터 2018. 2학기 현재까지 학과 추천이라는 이유로 강사 위촉 배제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시간강사로 재위촉한 사실이 있음.

### < 사례 2 >

○○지역대학에서는 2015. 2학기 ~ 2018. 1학기 출석수업 강사 위촉 시 전년도 강의 평가결과 하위 10% 미만인 자에 해당되어 위촉 배제 대상인 □□□ 등 27명과 하위 10% 미만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3.8점 미만인 ◇◇◇ 강사를 학과 추천이라는 사유로 재위촉한 사실이 있음

### < 사례 3 >

○○지역대학에서는 2018. 1학기 출석수업 강사 위촉 시 전(前)년도 강의 평가결과 하위 10% 미만인 자에 해당하는 ◇◇◇을 재위촉한 사실이 있음

## 6. 출석수업 강사료 지급 업무 부적정

《지적 1건》

출석수업 강사료는 수업 종료 후 2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근 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9학년도 1학기에 출석수업 강사 □□□ 등 50명에게 출석수업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최저 40일부터 최고 83일까지 지연 지급하였고, 감사당일까지 ◇◇◇ 등 55명에게 최저 40일부터 최고 78일까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음

## 7. 출석수업 강사료 지급 부적정

《지적 1건》

출석수업 교과목별 수업시간은 6시간이고 예외적으로 유아교육과 전공과목은 8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출석수업 강사료 및 연구보조비는 시간강사 구분(전업 또는 비전업)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2015 ~ 2018학년도 출석수업 운영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6.2학기 및 2017.2학기에 유아교육과 전공과목 출석수업을 담당한 시간강사 □□□ 등 18명의 시간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강의만별 실제 강의시간이 8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9시간으로 계산하여, 행정☆급 ○○○은 시간강사 □□□에 대한 정당지급액 440,000원이 아닌 495,000원을 지급하여 강사료 55,000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행정☆급 ◇◇◇은 시간강사 □□□ 외 16명에 대한 정당지급액 9,139,200원이 아닌 10,281,600원을 지급하여 강사료 1,142,400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총 1,197,4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지역대학에서는 2017.2학기에 유아교육과 전공과목 출석수업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위와 동일한 사유로, 행정☆급 ◇◇◇은 시간강사 △△△ 등 7명에 대한 정당지급액 280,000원이 아닌 315,000원을 지급하여 연구보조비 35,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8. 출석수업 강사료 지급 부적정 Ⅱ

《지적 2건》

출석수업 강사료는 수강인원 기준으로 지급하되 출석수업 강사료는 전업, 비전업 강사 구분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하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참고로 직업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전업, 비전업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출석수업 시간강사가 '국립대 조교수 이하'인 경우 최대 300,000원까지만 강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2015 ~ 2017학년도 출석수업 운영계획,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5. 1학기, 2016. 1학기 출석수업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징구하지 않은 채 비전업 시간강사를 전업시간강사로 분류하여 3명에게 강사료 총 616,800원을 초과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 2017학년도 1학기에는 □□대 소속 조교를 비전업시간강사로 위촉하여, 비전업시간강사 기준에 따른 강사료 330,000원을 지급한 결과 30,000원을 과다 지급하여 총 646,8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사례 2 >

○○지역대학에서는 2016. 2학기 출석수업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인 비전업시간강사 □□□를 전업시간강사로 분류하여 강사료 392,370원 및 연구보조비 90,000원, 총 482,37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9. 출석수업시험 출석부 및 성적표 관리 부적정

《지적 1건》

출석부 및 성적표를 임의수정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석수업평가 성적 부여 시, 출석수업 불참자와 출석시간 미달자 및 출석수업 평가 결시자는 00점으로 기재하고, 그 외 성적은 0~30점사이의 실점으로 기재하며, 학생이 출석수업평가에 미응시한 경우에는 감독관 확인란에 × 표기를 하게 되어 있음

근 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8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을 운영하면서, 출석수업 출석부 및 성적표 관리 시 총 181건(강사 122건, 전임교원 59건)에 대해 ‘점수합계’란 및 ‘감독관 확인’란을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는 등 출석부 및 성적표를 부실하게 관리 한 사실이 있음

## 10. 출석수업시험 성적 부여 부적정

《지적 1건》

강의 시작 전 위촉강사 전달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담당교수(강사)에게 성적부여 시 가급적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부여하고 응시자 전원에게 만점 또는 하위 점수를 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지하게 되어 있음

근 거 2018. 1학기 ~ 2019. 1학기 출석수업 운영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출석수업 시험 성적표 성적 부여 시 총 19건(전임교원 3건, 강사 16건)의 성적표에 시험 응시자 전원이 실점 30점 만점으로 성적이 부여되어 있는 사실이 있음

## 11. 출석수업시험 성적처리 기한 미준수

《지적 3건》

학생서비스 향상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출석수업시험 채점기간 준수를 당부하고 있고 출석수업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채점을 완료하고 14일 이내 인터넷을 통하여 학생이 본인의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본교 교수는 교과목 담당교수로서 솔선수범적으로 자체운영계획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은 2015. 2학기 ~ 2018. 1학기까지의 채점 내역 확인 결과, 2015. 2학기 ○○과 “◇◇◇” 과목은 채점 기한을 92일 경과하는 등 총 447과목(10.1%)이 채점 기한을 초과하고, 210과목(4.7%)의 학생성적이 열람 지연되었으며

- 특히 본교 교수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로서 출석수업 운영계획을 엄격히 준수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 채점을 완료하지 않아 성적처리를 지연한 사실이 있고 (※ 성적처리 지연 본교 교수 비율 37.1%)

- 또한 지역대학 출석수업 담당자는 기한 내 채점완료된 교과목에 대하여 담당자가 확인을 지연하여 총 34과목에 대하여 성적 열람 기한을 초과한 사실이 있음

### < 사례 2 >

○○지역대학에서는 2015. 2학기 ~ 2018. 1학기까지 총 1,284(13.9%)건이 출석수업시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채점이 완료되지 않았고, 그 중 14일 초과 940건, 30일 초과 193건, 50일 초과 105건으로 성적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아 출석수업시험 채점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출석수업시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채점을 완료하지 않은 본교 교수의 비율이 28.5%로 학생들의 성적열람을 지연시킨 사실이 있음

### < 사례 3 >

○○지역대학에서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총 367건의 출석수업 시험에 대하여 최저 30일부터 최고 108일까지 채점기간을 경과하여 채점하여, 학생들의 성적열람을 지연시킨 사실이 있음

## 12. 출석수업대체시험 성적 처리 부적정

《지적 1건》

유아교육과 시험감독관은 시험응시여부 확인 시 교원자격증(유치원 정교사1, 2급)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증 미소자에 대해서는 전공과목을 응시하지 못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성적처리 담당자는 동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전공과목 응시자에 대해 성적을 무효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2016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시행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의 2016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시행 시 감독관 3인은 유치원정교사 1,2급이 없이 출석수업대체시험을 신청한 ◇◇◇, ○○○에 대해 자격증 사본을 제출 받지 않고 해당 과목에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였으며, 성적처리 담당자 ☆☆☆는 해당 학생의 성적을 무효 처리하지 않고 성적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13. 출석수업 답안지 판독 및 성적처리 부적정

《지적 1건》

객관식 시험 종료 후 각 지역대학은 시험장별, 학과, 학년, 교시별 응시자 수와 OMR 답안지 실제매수 일치 여부 확인 후 판독하여야 하고 답안지 및 성적 대조명부를 출력하여 대조(답안지와 성적 리스트 대조) 확인 후 오류사항 발견 시 반드시 객관식 시험 OMR 답안지 성적처리 절차에 따라 지역대학장 결재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정정(정정자료 출력 보관) 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 및 각종시험 시행 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 학사☆급 □□□은 2015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015학년도 1학기 답안지 응시매수와 판독매수가 불일치한 누락자 7명에 대해 수기로 답안 입력을 하였고, 출석수업 대체시험 4회(2015학년도 1학기/2학기, 2017학년도 1학기/2학기), 계절수업시험 3회(2015학년도 하계/동계, 2017학년도 하계)로 총 7회에 대하여 성적 오류사항에 대한 지역대학장 보고(결재) 없이 시험 담당자가 학생 답안의 에러 사항을 정정하여 성적 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출력(복사)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14. 중간시험 과제를 평가 부적정

《지적 1건》

오프라인 과제를 접수 시 출석부 구분란에 제출차수('정시', '1차', '2차')를 표기하고 제출일자를 정확히 기재하며, 평가자는 정시·연장기간 제출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채점 후 지역대학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지역대학 담당자는 출석부에 기재된 제출 일자를 확인 하여 연장기간 제출자에 대하여 차등성적(감점)을 부여(1차 추가기간 2점 감점, 2차 추가기간 4점 감점) 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 및 중간(과제물) 시행 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7. 1학기 및 2018. 1학기의 중간시험 오프라인 과제를 시험을 시행 하면서 2017. 1학기 2과목, 2018. 1학기 1과목에 대한 출석부 구분란의 제출차수 및 응시(제출) 기재 시 제출 일자는 기재하지 않고 추가 기간 제출자에 한해 제출 차수만 기재하였으며, 연장기간제출자 성적 부여 시 2017. 1학기 기초한자 과목 연장기간 제출자 43명에 대해 지역대학 시험 담당자가 아닌 평가위원(시간강사 □□□)이 제출 기간에 따라 성적을 차등 부여(감점)한 사실이 있음

## 15. 과제물(중간 및 출석대체) 시험 성적 대조 부적정

《지적 1건》

각종 과제물 시험의 경우 평가위원이 평가를 완료한 이후 답안지, 성적표, 전산출력 성적리스트를 2인 이상의 대조자가 상호 교차하여 대조하도록 되어 있고, 대조를 완료한 성적표 표지에 대조자 및 책임자인 행정실장이 날인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7~2018학년도 과제물(중간 및 출석대체) 시험 성적표 성적대조 시 2인이 상호 교차 대조를 실시하지 않았고, 책임자인 행정실장도 확인하지 않은 등 2017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과제물(중간 및 출석대체)시험 성적표 대조 및 확인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16. 각종 시험 관리감독관 편성 부적정

《지적 1건》

시험 관리·감독관은 우리 대학 및 시험관리 지원학교의 정직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2017 ~ 2018 각종 시험 시행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7 ~ 2018학년도 기말시험 및 출석수업대체시험 실시를 위해 시험관리 지원학교에 감독관 관리·지원 요청을 실시하면서 정규 교직원이 아닌 □□대학교 연구조교 ◇◇◇을 2017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기말 및 출석수업대체시험 관리요원으로 위촉하여 금2,366,840원을 지급하는 등, 관리·감독관 부적격자인 4명에 대해 총 6,039,9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7. 각종 시험 감독관 및 관리요원 편성 부적정

《지적 1건》

감독관을 편성할 경우 시험실 별 20명 이하인 경우 1명으로 편성하고, 내부 관리요원은 시험실 수 5실 이하인 경우 1명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종시험 반 편성 원칙 및 감독관 수 배정원칙 등은 당해 단위 시험시행계획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2017. 2학기 기말시험 시행계획 및 학업 성적평가처리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7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감독관을 편성하면서 ○○지역대학 16명 시험실 1개소, 시험관리 지원학교인 □□대학교 20명 시험실 3개소에 대해 각각 감독관 2명을 편성하였고, □□대학교 시험실을 6실에서 5실로 줄였는데도 내부 관리요원을 2명 편성한 사실이 있음

## 18. 각종 시험 응시허가증 관리 소홀

《지적 1건》

응시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해서 해당 시험장 시험관리 책임자의 응시허가서를 발급 받아 시험에 응시한 경우 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2018. 2학기부터는 14일 이내) 본인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 각종시험 시행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현재까지 각종시험과 관련하여 응시허가증 확인자료를 남겨두지 않고 폐기하여 응시허가증 발급 응시생의 신분 확인 여부를 추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있음

## 19. 각종 시험 결시자 성적 인정 부적정

《지적 1건》

각종 시험에 불가피한 사유(출산, 입원, 각종사고, 각종행사 등)로 결시한 학생에 대한 결시자 인정범위 중 “각종행사”는 국가(공공기관 포함)의 공무상 각종행사 근무(동원)된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학생이 지역대학장에게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원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역대학장이 승인한 후 중간평가지험에 결시한 학생들은 기말 시험성적을 환산하여 그 성적을 인정해주고 기말시험에 결시한 경우에는 기말추가시험으로 환산 성적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 및 각종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처리 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 행정☆급 ◇◇◇ 등 4명은 2015학년도부터 2018. 감사일 현재까지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입시논술고사 참여와 공무원 초과근무에 대해 결시자 인정범위가 아닌데도 결시자로 승인하였고, 또한 근무(동원, 훈련) 사실 증빙서류 미제출 자에 대하여 결시자 승인처리를 하여 성적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있음

## 20. 각종 시험 결시자 성적 인정 부적정 Ⅱ

## 《지적 2건》

불가피한 사유로 각종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결시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각종 사고’의 경우, 응급사고로 인해 시험 당일 결시한 응급환자 본인이 응급을 요하는 진료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결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 2, 4군에 속하는 법정 전염병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근거 학업성적평가처리규정 및 2015 ~ 2018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 학사☆급 □□□ 등 2명은 2015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당일에 응급환자가 아닌 인후통 및 두통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과 ◇◇◇에 대하여 ‘각종사고’ 사유로 결시 인정을 승인하는 등,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총 2건의 결시인정 미대상 사유에 대해 승인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 〈 사례 2 〉

○○지역대학에서는 2017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당일에 응급환자가 아닌 위장염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학과 □□□에 대하여 ‘각종사고’ 사유로 결시인정을 승인하는 등, 2016학년도 2학기부터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총 4건의 결시인정 미 대상 사유에 대해 승인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 21. 기말시험 듣기평가용 CD 검사 부적정

《지적 1건》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를 이행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55조에 따르면 계약의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사례 1 >

○○과에서는 2017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듣기평가용 CD 제작을 위해 ◇◇◇과 오디오 CD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이 오디오CD가 아닌 MP3 CD로 잘못 제작·납품 하였으나, 시험 관리팀장 ☆☆☆와 기말시험 담당자인 □□□은 납품된 CD의 재생 가능 여부만을 CD플레이어로 확인하였을 뿐, 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잘못 제작된 평가용 CD를 각 시험장에 배부하였고, 검사조서는 CD 납품일로부터 44일이 경과하여 작성하는 등 검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있음.

- 따라서, 잘못 제작된 듣기평가용 CD로 인해 2017. 2학기 기말시험 1학년 영어듣기평가 교과목(시험시간: 12:35~13:25)의 CD가 해당 6개 시험실의 학생 116명이 듣기평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결국, ○○과는 부실한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 116명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111명에게는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시험지 제작 비용 및 시험감독수당 등 총 653,000원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음.

## 22. 기말시험 관리·운영 부적정

《지적 1건》

직원은 대학의 지휘명령에 따라 맡은 직무를 신의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험 진행 중 각종 사건·사고 등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선보고 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취업규칙, 2017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시행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 ◇◇시학습관 기말시험 관리요원인 □□□은 2017. 2학기 기말시험 듣기평가 교과목인 ‘영어듣기평가’ 시험시작 시간 즈음 시설담당자인 ○○○가 중앙오디오시스템에서 듣기평가 CD 재생에 실패하자 시험시간이 15분 경과한 뒤에야 ○○지역대학 기말시험 담당자에게 CD재생 불가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 □□□은 해당 ○○지역대학 기말시험 담당자로부터 즉각적인 강의실 PC 사용 등의 지침을 전달 받았으나 시험관리책임자인 △△△과 관리요원인 □□□, ○○○, ☆☆☆은 강의실 스피커 및 마이크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해당 교과목의 듣기평가 시험이 실시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은 기말시험 당일 1학년 영어듣기평가 시험이 시작된 직후 듣기평가용 CD를 이용한 시험 진행이 실패한 사실을 어디에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시험시작 시간으로부터 35분이 경과한 후 일부 학생의 반발과 시험장 이탈이 발생하자 사전보고 절차도 없이 학생들을 임의 귀가조치하고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 23분이 경과한 뒤에야 ○○지역대학에만 해당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있음.

# 제 2 장

학생 · 학적  
관리 분야

## 1. 교내 근로장학생 선정 부적정

《지적 1건》

교내근로장학생의 총 근무가능 기간은 3년이고, 졸업 등 학적변동자가 다시 신입입하여 근무할 경우 기존 근로부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근무기간인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일인이 다른 학번으로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고, 교내에서 근로할 장학생은 근무부서와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근로와는 달리 교외근로자가 배정되어 있지 않음

근 거 2016 ~ 2017학년도 교내근로장학생 관리 운영 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학과 □□□이 2012. 9. 1.부터 2015. 2. 28. 까지 20개월 간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고 졸업한 다음 ◇◇학과로 편입하여 다시 교내근로장학을 신청하였음에도, 신입입 사실 및 과거 교내근로장학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2017. 3. 1.부터 2019. 8. 31.까지 교내근로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최대 근무기간 3년을 초과한 이후 현재까지 10개월 간 총 11,333,600원의 교내근로장학금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고, 2016학년도 1학기 교내근로장학생으로 선발한 ◇◇◇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에서 운영하는 △△△에서 2016. 4. 1.부터 2017. 2. 28.까지 11개월 간 근무하게 하여 [붙임2]와 같이 총 10,670,000원의 교내근로장학금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2. 교내 장학생 선발 부적정

《지적 1건》

☆☆장학생 선발 시 성적우수B·C, 학생회 임원B, 근로장학금 수혜자를 제외한 타 장학 수혜자는 선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2017. 1학기 ☆☆ 장학생 운영 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7. 1학기 □□협회 ☆☆사회에서 후원하는 외부 장학생 중 1명을 ◇◇◇로 선발하여 2017. 5. 1. 장학금을 지급하였음에도, 2017학년도 1학기 ☆☆ 장학생으로 ◇◇◇를 추천하여 중복 장학금 혜택을 받게 한 사실이 있음

### 3. 외부 장학금 대상자 추천 부적정

《지적 1건》

해당연도 각 학기에 등록금 전액 또는 기타 등록금 상당액의 장학금을 받은 자는 장학생 추천 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2017년도 ☆☆장학회 장학생 추천 의뢰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343,800원)을 받은 ◇◇과 3학년 □□□을 2017년 ☆☆장학회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등, 다른 장학금을 지원받은 총 2명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장학금 : 1인당 300,000원)하여 국가장학금이 중복지급 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4. 학생주소록 관리 부적정

《지적 1건》

학생주소록을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사용(열람)하는 교직원에게는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주소록 사용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한 후 사용 종료된 주소록은 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자체 보관·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1조 및 학생주소록 관리 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6 ~ 2019학년도까지 학생과 등으로부터 총 7건의 신·편입생 합격자 명단을 인수하였으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사용 및 폐기 시 서약서, 사용대장, 폐기 현황 등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5. 학생회회계 집행 부적정

## 《지적 1건》

지역대학에서는 직전학기 학생회회계 결산내역서(결산서 및 자체감사 결과를 회계 기간 종료일 30일 이내 지역대학에 제출)를 제출받고, 학생회로부터 당해학기 학생회 회계에 대한 예산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승인하여 1차 지출예산 자금을 송금하도록 되어 있고, 1차 송금액에 대한 집행결과(수입결의서, 지급결의서, 회계장부 작성 및 증빙서류 등)를 확인 후 2차 지출예산 자금을 송금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는 지급결의서에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되 간이영수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2015~2018학년도 학생지도 기본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 학사☆급 □□□ 등 5명은 2015. 1학기~2016. 2학기 학생회회계 관련 서류(보존기간 5년)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2017. 1학기~2018. 1학기에는 학생회로부터 예산서 작성여부 확인 없이 1차 지출예산 자금을 송금하였으며, 2017. 1학기~2017. 2학기 결산내역을 2018. 4. 4.에 접수하여 결산내역 확인을 적시에 하지 않았고, 매학기 1차 송금액에 대한 집행 결과 확인 시 여러 회계 증빙서류가 누락 또는 미비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2차 및 3차 지출예산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

## 6. 시군학생회 운영지원비 집행 부적정

《지적 1건》

시·군학생회 운영비 지원금은 월 또는 분기 마감 후 15일 이내에 집행내역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고, 정산서에는 지출내역별 증빙서류(영수증 등)가 첨부되어야 하며, 정산내역이 집행범위를 벗어나거나 증빙자료 미비 시에는 집행액 반납, 정산서 미제출 시에는 차기 운영비 지급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음

근 거 2016~2019학년도 학생지도 기본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시학생회 등에 지급한 시·군학생회운영비 중 2개 분기( '16. 1/4분기, 3/4분기)의 경우 정산서를 분기 마감 후 15일을 경과하여 제출 받아 정산 처리 한 사실이 있고, 2016. 1분기~2018. 4분기까지 지급한 운영비 중 총 8회, 6,000천원(분기별 750천원)의 학생행사비 집행액에 대하여 집행근거 및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카드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정산 처리하였으며, 2016. 1분기~2017. 1분기까지 지급한 운영비 중 총 5회, 6,000천원(분기별 1,200천원)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고지서 등의 증빙서류 없이 통장입출금거래내역서만 첨부하여 정산 처리한 사실이 있음

## 7.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처리 관리 소홀

《지적 1건》

학적부 기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적부 정정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대학 소관 업무 중 '학적부기재사항 정정 및 처리'는 학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학적사무 처리 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5. 10. 1.부터 2019. 3. 31.까지 총 153건의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 처리하면서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처리 결과에 대한 결재(증빙서류 확인 불가)만을 받고, 학적부 정정 증빙 서류에 대하여 지역대학장 확인 없이 처리하였으며, □□□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처리 시 증빙 자료(주민등록초본)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8. 장애학생 도우미 교육 미실시

《지적 1건》

장애학생에게 필요 시 교육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교직원 및 교육보조인력의 교육을 실시하며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및 도우미에게 장애이해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실시하면서 2019년부터는 현장실습 교육을 병행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학생 지원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및 도우미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제 3 장

복무 · 서무  
관리 분야

## 1. 승진시험(면접) 참석자 공가 처리 부적정

《지적 2건》

소속 공무원이 승진시험 등에 응시할 때에는 시험 응시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 사례 1 〉

○○지역대학 행정□급 ◇◇◇는, 대학본부에서 실시하는 승진후보자 인터뷰 평가에 참석하면서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비 212,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 사례 2 〉

○○지역대학 행정☆급 □□□ 등 3명은 대학본부에서 실시하는 승진후보자 인터뷰 평가(면접)에 참석하면서 총 3회 관내출장으로 승인처리하고 출장비 5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2. 부서운영비 집행 부적정

《지적 1건》

부서운영비(비서실 및 과 운영비) 집행 시 식사경비 집행이 불가(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하고 일용직 식대 등 인건비성 보조금 집행이 불가하게 되어 있음

근 거 기성회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출석수업시험(2016 ~ 2018)시 식대 등 인건비성 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한 부서운영비로 2016 ~ 2018 출석수업시험 당일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 3. 대학회계직원 보상휴가 사용 부적정

《지적 1건》

보상휴가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해당 시간과 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로서, 보상휴가 시간은 초과근무 인정 시간의 1.5배(50% 가산)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상휴가 사용일에는 초과근무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대학회계직원 초과근무 및 보상휴가제도 운영 세부 시행 방안

#### < 사례 1 >

○○지역대학 학사□급 ☆☆☆은 지역대학 재직 당시에 학생서비스센터 근무로 인한 보상휴가를 당일 09:00~10:30까지 사용하였으나, 학생서비스센터 근무를 위한 초과근무(1시간)를 당일 18:00~20:00까지 실시하여, 보상휴가 사용일에 초과근무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 4. 일용인부 고용 절차 소홀

《지적 1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그 형이 판결 및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채용 전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조치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대학에서는 전 부서에 공문(행정지원과-6108, '18.7.9.)으로 안내하였음

근 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 사례 1 >

○○지역대학 학사□급 ☆☆☆ 등 5명은 일용인부로 고용된 청소원 4명, 전산실습보조원 1명, 수강 및 등록상담원 1명 총 5명에 대하여 채용 전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5. 일용인부임 주휴수당 미지급

《지적 1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해당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유급휴일(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유아방 일용근로자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부임을 지급하면서 8일을 개근한 □□□에게 주휴수당 1일에 상당한 60,3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6. 근로계약서 교부 지연 부적정

《지적 1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근로기준법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수업조교 ◇◇◇를 임용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담긴 우편을 늦게 발송하여 근로계약서 교부를 43일 지연한 사실이 있음

# 제 4 장

보안관리  
분야

## 1. 보안업무 추진에 관한 부적정

《현지조치》

-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 두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 · 기록하게 하여야 함
- 지역대학장은 보안업무추진계획, 안전지출파기계획, 시설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보안업무 처리 규정

### < 사례 1 >

OO지역대학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안점검표를 전혀 기록하지 않았고, 2018년부터 처음 비치 · 기록한 사실이 있음

### < 사례 2 >

OO지역대학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보안업무추진계획, 2016~2017년에는 안전지출파기계획, 시설방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시설방호계획에 의무 포함사항인 외래인 출입통제방안, 당직근무제도의 내용이 없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 문서(2017~2018 안전지출파기계획, 시설방호계획)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 보안서약서 등 징구에 관한 사항

《현지조치》

보안업무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는 소속 직원의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작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상기 서약서 등을 빠짐없이 징구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보안업무 처리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 사례 1 >

OO지역대학에서는 일부 학장 및 조교 4명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3. 저장매체 불용처리 부적정

《현지조치》

‘사용자 및 시스템관리자는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불용처리(폐기 등)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개인용 컴퓨터의 저장매체를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없이 불용물품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음

### 4.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현지조치》

자체 PC보안행사에 참여하여 안전한 업무용 PC 환경을 갖추도록 되어 있음

근 거 정보보안지침,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 알림’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관리되는 총 5명의 PC 사용자가 상기 보안진단의 날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사례 2 >

○○지역대학에서는 총 4명의 PC 사용자가 상기 보안행사에 일부 참여하지 않고, 1명의 PC 사용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5. 비밀번호관리 부실

《현지조치》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장비비밀번호(1차), 사용자인증비밀번호(2차), 자료별 비밀번호(3차)를 설정하고 그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보안기본지침

## &lt; 사례 1 &gt;

○○지역대학에서는 장비비밀번호(CMOS)를 설정하지 않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숫자와 문자의 단순 혼합 또는 9자리 미만으로 설정한 사실이 있음

## &lt; 사례 2 &gt;

○○지역대학에서는 로그인 및 화면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6. CCTV 설치·운영 부적정

《현지조치》

지역대학장은 '영상정보처리방침'을 지역대학 홈페이지에 탑재하여야 하고, 정보주체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안내판을 설치하고 동 안내판에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함

근 거 개인정보 보호법, 우리 대학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지침

## &lt; 사례 1 &gt;

○○지역대학에서는 감사일 현재 CCTV 설치·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역대학 홈페이지에 탑재된 '영상정보처리방침'에 관리책임자가 전 학장으로 되어있고, 정문 현관에 영상정보기기를 설치·운영하면서 위 내용이 포함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7. 개인정보 노출에 관한 사항

《현지조치》

개인정보파일 취급 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 < 사례 1 >

○○지역대학 소속직원 5명은 2015년부터 생산된 전자문서 중 23개문서에 300건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2대의 PC에 8개 전자파일에 161건의 주민번호가 저장되었으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3대의 PC 공유폴더에 11개 전자파일에 18건의 주민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별도의 안정성 도구(보안결재 및 암호화 등)없이 관리한 사실이 있음

### < 사례 2 >

○○지역대학 소속직원 조교 9명은 2017년부터 생산된 전자문서 중 38개 문서에 첨부된 38개 전자파일에서 1,517건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4대의 PC 9개 전자파일에서 주민번호가 저장되었으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5대의 PC에서 개별 이동매체(외장디스크, USB)로 이동 보관된 214개 전자파일에서 10,818건의 주민번호가 별도의 안정성 도구(보안결재 및 암호화 등) 없이 관리된 사실이 있음

### < 사례 3 >

○○지역대학 소속직원 10명은 생산문서 중 47개 문서(붙임파일) 1,555건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었고, 업무용 PC 2대에 10개의 파일 393건 주민번호가 포함되었으며, 4대의 PC 공유폴더에 148개의 개정정보파일이 별도의 안정성 도구(암호화 등)없이 파일 형태로 관리된 사실이 있음

# 제 5 장

회계관리  
분야

## 1. 각종 시험관련 수당(사례금) 지급 부적정

《지적 1건》

시행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서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법령 및 학칙 등에 근거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각종 시험 시행계획 예산집행기준, 2017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각종 시험(기말시험, 출석수업대체시험, 계절수업시험) 시험관리지원학교 담당자 교육 시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해야 하는 사례비(1인당 30,000원)를 교육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2015년부터 2017년 2학기까지 시험관리지원학교 담당자에게 1인당 30,000원씩 총 3,480,000원의 수당(사례비)를 실비변상적 인적경비 예산과목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 전기요금(기본요금) 절감 노력 소홀

《지적 1건》

‘예산은 사업별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되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컴퓨터 회선사용료 등 절약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절감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5. 4. 11.부터 2018. 4. 20. 현재까지 OO시학습관 등 2개 학습관의 전기 요금을 집행하면서 기본료를 현행 ‘일반용(갑)저압’에서 ‘교육용(갑)저압’으로 변경할 경우 전기요금 575,640원(최근 3년간, 기본료 기준)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3.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지적 1건】

식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총당하는 여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출장 중 부서운영비로 식비를 처리한 경우에는 식비를 감액하여 이중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은 근무시간외 활동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출장 등과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각종시험(중간시험, 출석수업대체시험, 기말시험)의 경우 중식비를 포함하여 관리·감독관 사전교육 수당(21,000원/인·일)을 지급하므로 시험당일 관리요원 및 감독관 출장 시 식비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 공무원이 승진시험 등에 응시할 때에는 시험 응시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2015 교직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지급 계획, 2016~2017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각종시험 시행계획,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시 MOU 협약식 참석 출장자 4명이 부서운영비로 □□시학생회와 협약식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집행액: 190,000원)를 하였음에도 식비를 감액하지 않고 출장자에게 28,350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학생지도를 위해 ◇◇시학습관 총학생회 학생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출장자 4명(2015학년도 학생지도 비용 수령)에게도 관내 출장 여비 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 2016. 2학기 기말시험 협력학교 방문 출장자(☆☆☆ 등 2명), 2017. 1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운회송 출장자(○○○ 등 2명), 2017. 2학기 중간시험·출석수업대체시험 운회송 출장자(△△△ 등 2명)에게 중식비가 포함된 관리감독관 사전교육 수당을 지급했음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총 477,410원의 여비를 지급하여 70,040원의 식비를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대학본부에서 실시하는 승진후보자 인터뷰 평가(면접)에 참석하면서 총 2회 관내출장으로 처리하고 행정□급 □□□에게 출장비 총 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회계처리 부적정

《지적 1건》

국립대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라고 되어있고, 지원금의 종류에 ‘지방자치단체는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한 세입 및 지출 처리를 대학회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 사례 1 >

○○지역대학 행정실장 □□□ 등 6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16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후 관련 규정에 따른 수입 및 지출결의 등의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 221,129,000원을 수령하고, 194회에 걸쳐 총 206,6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 5. 민간경상보조비 집행 부적정

《지적 1건》

“민간경상보조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학생 포함)에 대한 경상적 지원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의무 이행가능성 여부 점검 후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교부 후에는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사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8학년도 멘토링 운영’ 등 학생활동 및 행사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에서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하여 ○○지역대학으로 재배정한 예산을 □□과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2018. 4월부터 현재까지 ‘학생회 임원 간담회비’ 등 7건(총 4,147,160원)에 대하여 민간(학생포함)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경비를 직접 집행한 사실이 있음

## 6. 회계별 소관 집행 부적정

《지적 1건》

일반회계 및 국립대학회계가 구분되어 있고 그 회계 소관에 맞게 지출을 적용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 업무수행 관련된 회계는 그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국가재정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 사례 1 〉

○○지역대학 행정실장 □□□ 등 5명은 2015. 11월부터 2018. 6월까지 산학협력단의 소관 업무수행 관련 출장비 지급 시 학사□급 ◇◇◇ 등 12명에게 관내출장으로 여비 240,000원, 전 학장 ☆☆☆ 등 4명에게 관외출장으로 여비 170,000원, 총 16명에게 410,000원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집행하지 않고 대학회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7. 지출원인행위 및 과목 정정처리 부적정

《지적 1건》

지출원인행위는 국립대학의 장 또는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예산과목 정정은 총장이 임명한 재무관(분임 재무관 포함)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무관(분임재무관 포함)과 지출관(분임지출관 포함)은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근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학년도 국립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 전 행정실장 ◇◇◇ 등 4명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017학년도 시험관리학교 사용료’ 등 29건의 지출원인행위 및 예산과목정정의 건(총 92,064,510원)에 대하여 학장의 연가 등을 이유로 분임지출관인 행정실장이 처리한 사실이 있음

## 8. 대학회계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지적 1건》

예산은 사업별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예산집행 시에는 “대학회계 세입세출각목명세서”의 내용과 부합되게 예산과목을 적용하고 임의로 다른 과목의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 있음

근 거 대학회계 세출예산 기본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 전 행정실장 ◇◇◇ 등 3명은 두 번에 걸쳐 대학회계세출예산서와 사업기본계획에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2015학년도 하계계절수업 간식비(금 1,002,590원)’ 와 ‘2016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간식비(금3,726,700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아닌 ‘그 밖의 실비변상 인적 경비’ 과목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9. 예산과목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지적 1건》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등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은 ‘관리용역비’로 편성·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2019 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상기 용역에 대하여 2019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과목 중 ‘시설장비 유지비’ 로 편성하여 현재까지 용역비 627,000원(매월 209,000원, 3~5월분)을 집행한 사실이 있고, 지역대학별로 상기 예산을 상이(‘관리용역비’ 6지역, ‘시설장비유지비’ 7지역)하게 편성하고 있음

## 10.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적 1건》

회계관계직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교육부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감사범위기간 중 2018년 ‘시험협력학교 시험장 사용 관련 업무관계자 간담회’ 500,000원을 포함한 7건 5,254,000원을 집행하면서 상대방 소속 및 성명이 기재된 증빙서류 없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고, 최근 1년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8건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카드 영수증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실명을 서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11.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지적 1건》

출석수업 업무추진비는 주어진 산출식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2019학년도 예산집행 기준에 집행하여야 하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또한회계 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에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근 거 2019 대학회계 예산 편성지침, 2019. 1학기 출석수업 운영계획, 국고금관리법,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9학년도 출석수업 업무추진비를 1,380,000원(23학과×30,000원×학기수×1.0) 편성하여야 하는데 3배가 되는 4,140,000원(23학과×30,000원×학기수×3.0)을 편성한 사실이 있으며, 감사일 현재 업무추진비를 4,069,310원을 사용하여 과다집행한 사실이 있음

## 12. 각종시험 식대 중복 지급

《지적 1건》

각종 시험(중간시험, 출석수업대체시험, 기말시험, 계절수업시험)의 경우 증식비를 포함하여 관리·감독관 사전교육 수당(21,000원/인·일)을 지급하므로 시험 당일 관리요원 및 감독관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근 거 2016 ~ 2019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 각종시험 시행 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중간시험(2016) 및 기말시험(2016~2018)시 식비가 포함된 관리·감독관 사전교육 수당을 지급했음에도 식대 등 인건비성 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한 부서운영비로 시험 당일 식사를 제공한 사실(총 5일, 279,400원)이 있음

## 13. 납세증명서 징구 소홀

《지적 1건》

납세자는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근 거 국세징수법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조달청에서 경쟁입찰로 계약 체결된 시설관리용역 계약에 대한 용역 대금 지급 시 납세자(계약상대자)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받지 아니하고 총 31회 374,587,1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4. 공사의 수의계약 부적정

《지적 1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사례 1 〉

○○지역대학 행정◇급 □□□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역대학 강의실 방음 공사’ (추정가격 20,909,090원)와 ‘☆☆시(학) 이전건물 내부공사 및 기존건물 원상복구공사’ (추정가격 26,800,000원) 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15. 용역계약 입찰공고 부적정

《지적 1건》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미만인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사례 1 〉

○○지역대학 행정◇급 □□□은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추정가격 234,891,818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 시설물관리(청소)용역’ 입찰 공고에서 참가자 자격을 ☆☆시, □□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자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한 사실이 있음

## 16. 용역계약 사후정산 부적정

《지적 4건》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하여야 함

근거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3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 부터 제94조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조달청을 통해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 총 2건의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명시 하였음에도 3건의 계약 건 모두 국민건강보험료 등 총 13,445,470원을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사례 2 >

○○지역대학 행정실장 □□□ 및 행정☆급 ◇◇◇는 조달청을 통한 2016년도 시설관리 용역 계약 총 3건(청소·방호·기계 370,918,230원, 청소 216,641,170원, 방호 115,876,900원, 기계 38,400,160원)에 대하여 입찰공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 건 모두 국민건강보험료 225,592원, 국민연금 5,830,110원, 장기요양보험 14,778원(총 6,070,480원)을 사후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사례 3 >

○○지역대학에서는 2016. 3월부터 2018. 2월까지 총 2개의 업체와 조달청을 통한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명시 하였음에도 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총 5,055,690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사례 4 >

○○지역대학에서는 조달청을 통해 2016학년도 시설관리용역 계약(2건)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명시 하였음에도 2건의 계약 건 모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제 6 장

물품 · 도서  
· 국유재산  
관리 분야

## 1. 관사 비품 지원 부적정

《지적 1건》

관사의 비품 지원 기준은 지침 별표 2의 품목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지역대학 관사 운영 관리 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 학사 ☆급 □□□은 2017년 11월 17일 관사비품 지원기준에 없는 소파(1개 /930,000원)를 구입하여 지역대학장 관사에 지원한 사실이 있음

## 2. 관사 운영비 지원 부적정

《지적 1건》

관사의 운영비는 명시된 4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근 거 지역대학 관사 운영 관리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관사 운영비 지원 기준에 없는 ‘지역대학장 관사 환경개선(청소)’를 계약하여 550,000원을 대학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고, ‘지역대학장 관사 커튼세탁’을 계약(2018. 4. 13.)하여 110,000원을 대학회계에서 집행(2018. 4. 16.)한 사실이 있음

### 3. 지역대학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 《지적 1건》

중앙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거나 유사한 자료로 대물 변상하여야 하고, 이용가치 상실자료 및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교환, 이관 및 폐기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중앙도서관 이용 규정

#### < 사례 1 >

○○지역대학 사서☆급 □□□ 등 3명은 2015. 5월부터 2018. 6월말까지 도서 관리하면서 2018. 6월말 기준 총 장서 수 161,228책 중 ◇◇◇ 등 11책의 대출 후 미 반납된 회수 불가능한 도서에 대하여 자료 변상 등을 조치하지 않았으며, 보존서고에 소장된 장서활용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관된 총 장서 수 47,429책 중 대출도서는 82책(활용도 0.17%)으로 미 이용자료 47,347책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교환, 이관, 폐기)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음